



방송통신위원회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2016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관련 자료 제출 요청

1. 관련

- 가. 방송법 제69조의2(시청점유율 제한)
- 나. 방송법 제98조(자료제출)
- 다.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의3(시청점유율 산정 기준 등)
- 라.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(자료제출)

2. 방송법 제69조의2에 따라 「2016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」 산정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제출기한 : 2017. 3. 31.(금)
- 나. 제출방법 : 전자우편 제출(tv2016@kcc.go.kr)
- 다. 제출내용 : 붙임 참조

3. 아울러, 「시청점유율 산정 관련 자료 제출 안내(붙임1)」와 「시청점유율 산정 관련 자료 제출 양식(붙임2)」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cc.go.kr> - 알림마당 - 공지사항 - 공지제목 : 2016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자료 제출 안내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시청점유율 산정 관련 자료 제출 안내 1부.
2. 시청점유율 산정 관련 자료 제출 양식(7종) 1부. 끝.

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



수신자 지상파방송사업자, 종합유선방송사업자, 위성방송사업자, 방송제작·유통사업자

★주무관 양중배 행정사무관 이상목 미디어다양성 전결 2017. 3. 21.
정책과장 김성욱

협조자

시행 미디어다양성정책과-201 (2017. 3. 21.) 접수

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, 2동 방송통신위원회 / www.kcc.go.kr

전화번호 02-2110-1462 팩스번호 02-2110-0137 / loach77@kcc.go.kr / 비공개(5)

개방·공유·소통·협력의 정부3.0,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